

상훈심의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(이하“본부 학회”라 한다)의 포상과 타 기관의 상훈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훈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회상의 수상자의 선정
2. 상장 및 상패의 규격
3. 부상 및 상금의 내용
4. 학회상의 별도 명칭의 선정
5. 타 기관의 상훈후보의 추천

제3조(구성) 본 위원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된다. 또한, 위원회의 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이사로 선임한다.

제4조(회의)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회의 의결은 전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본상 수상자의 선정은 전위원의 찬성으로 한다. 부득이하여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.

제5조(심의) 상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고, 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서만이 행할 수 있다.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수상 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는 추천자로부터 보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